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북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·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4)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(안 제5조)
- 5) 관계인에 대한 권고(안 제6조)
- 6)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- 7) 사무의 위탁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안 제1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전기자동차, 충전시설, 전용주차구역, 안전시설, 관계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.

3)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4)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(안 제5조)

- 구청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이는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비용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시켜 보다 적극적인 설치유도를 이끌어 내는 한편, 전용주차구역별 통일성 있는 안전시설 확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봄.

5) 관계인에 대한 권고(안 제6조)
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6)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7) 사무의 위탁(안 제8조)

3) 검토 의견

○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.

○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